

제주지방법원 2021. 7. 14 선고 2020나1558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제주지방법원 2021. 7. 14 선고 2020나15584 판결

제주지방법원 2020. 9. 14 선고 2019가단69287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

피고, 항소인 B
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철

변론종결 2021. 5. 26.

판결선고 2021. 7. 14.

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. 9. 14. 선고 2019가단69287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심판결 주문 제1, 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‘별지 목록’ 중 제1항 5, 6행과 제2항 2, 3행의 각

“접수번호 10768호”를 각 “접수번호 107868호”로 각 경정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9. 12. 5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19. 12. 6. 접수 제1078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,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되, 제1심판결 주문 제1, 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‘별지 목록’ 중 제1항 5, 6행과 제2항 2, 3행의 각 “접수번호 10768호”는 각 “접수번호 107868호”의 오키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강 건, 판사 정양순, 판사 이범휘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1. 제주시 E

【도로명주소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

블럭조 스텔트지붕단층상점 18.51㎡

부속건물 목조기와지붕단층주택 42.81㎡

(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지분 : 갑구 3번 2019. 12. 6. 접수번호 107868호

로 경료된 지분 1/2 전부)

2. 제주시 E 대 133㎡

(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지분 : 갑구 3번 2019. 12. 6. 접수번호 107868호

로 경료된 지분 1/2 전부). 끝.

